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6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년 11월 23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결을 위하여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, 신속적 운용 및 긴급한 사안의 대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,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예외사유 규정을 두어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2. 주요골자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삽입함(안 제5조제5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5항 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”를

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”로 한다.

〈 수정안조문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p> <p>①~④ (생략)</p> <p>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 ----- -----.</p>	<p>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</p> <p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</p>
<p>⑥ (생략)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5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신·구조문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p> <p>①~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3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</p> <p>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</p>
<p>⑥ (생략)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</p>